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심결사례

2000. 2. 2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사)한국주유소협회 대구광역시지회 및 경상북도지회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 (9910구사1402~1403)</p>	<p>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 대구광역시지회 및 경상북도지회는 대구·포항간 국도변에 소재한 주유소들간에 휘발유 및 경유의 가격경쟁이 심화되어 그 영향이 대구광역시 전역에 파급될 것이 우려되자 판매가격은 구성사업자 각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지역 및 국도변에 소재한 경상북도 지역 주유소들의 휘발유 및 경유 판매가격을 인상할 목적으로 1999. 9. 2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소재 음식점에서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대구광역시 일원에 소재한 주유소 및 위 국도변에 소재한 경상북도 지역 주유소의 휘발유 및 경유 판매가격을 1999. 9. 10자로 각각 리터당 1,220원~1,230원 및 560원으로 인상하여 판매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동 합동회의에서 결정된 가격인상내역을 1999. 9. 3부터 9. 10까지 각자 구성사업자에게 전화통화 및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면서 이에 따를 것을 독려하여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지역의 석유류 소매업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 26조제1항제1호 위반</p>	<p>◎ 경쟁제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하고, 동 사실을 연명으로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지역을 발행대상으로 하는 2개 지방일간지(전판)에 5단×12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2000. 2. 7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및 서울특별시치과기공사회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 (9911단체1586, 9910단체1466)</p>	<p>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및 서울특별시치과기공사회는 1997. 4. 17 각자의 협상대표간에 기공물 제작수가를 협의·인상결정하고 이에 관한 '공동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1998. 12. 14 서울시 중구 을지로3가 소재 송원일식집에서 모임을 갖고 치과기공물 제작수가를 현행 대비 평균 14.78% 인상조정하여 1999. 1. 1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고, 1998. 12. 17 치과기공사회의 회의실에서 제4차 임원 및 구(區)회장 연석회의를 개최</p>	<p>◎ 경쟁제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자신들이 각각 발간하는 "서치뉴스" 및 "치과기보"에 각각 5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p>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하여 합의·결정한 기공물 제작수가를 표준수가로 하여 1999. 1. 1부터 적용하기로 결의하였으며, 동 결의에 따라 제작한 '서울지역 치과기공물 수가표'를 1998. 12월 하순에 각 구회장을 통하여 구성사업자에게 배포하고, 그 후 1998. 12. 28, 1999. 1. 19 및 1999. 3. 6 등 3차에 걸쳐 문서로 구성사업자에게 동 수가표를 준수하도록 촉구하였으며, 치과의사회는 위 합의결과를 토대로 구성사업자에게 기공물의 구매가격제한선을 알려 준다는 취지의 '1999년도 서울특별시 기공수가 안내문'을 작성하여 1998. 12. 19 제주도 소재 KAL호텔에서 개최된 제2회 임시이사회에 승인절차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동 안내문을 서울특별시 20개 구회(區會)를 통해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등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가격결정권을 침해하여 서울지역의 치과의료업분야 및 치과기공물제작업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1호 위반</p>	<p>록 함</p>

2000. 2. 11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대한주택보증(주)의 거래 거절행위에 대한 건 (9909유거1369)</p>	<p>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주)성원 및 동 계열사(이하 "(주)성원 등"이라 함)의 임대아파트건설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주)성원 등에게 토지매입보증, 분양보증, 감리비에치보증 등 각종 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주)성원 등의 부도로 1999. 10. 19 251억원을 보증채권자에게 대위변제하였는 바, (주)성원 등의 부도로 대위변제한 금액의 회수가 어려워 짐에 따라 공동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주)에게 대위변제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한국토지신탁(주)가 동 금액의 지급을 거부하자 동 회사와의 채권채무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택보증관련시장에 있어 독점적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주택보증관련 업무거래를 중지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제1호 위반</p>	<p>◎ 거래거절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p>
<p>옥배아 제조 5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p>	<p>대상(주), (주)삼양제넥스, (주)두산, (주)신동방 및 (주)두산콘프로덕츠크리오는 각 사가 옥수수 가공과</p>	<p>◎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p>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9909단체1345)	<p>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옥배아의 실수요자 공급가격(기준가격)을 1999. 9. 1자로 20원/kg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그 사실을 각각의 실수요자인 착유업체들에게 문서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였으며, (주)두산의 영업팀 차장은 1999. 8월 중순부터 착유업체 방문시에 만난 대상(주) 등 경쟁사의 영업담당자들과 옥배아 성수기 도래에 따른 가격인상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후, 2~3차례 유선으로 각 사의 가격인상 정보를 파악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옥배아의 인상가격을 결정하였고, 대상(주)는 전분당사업본부 영업2팀의 1999. 8. 28자 주간업무보고시 “배아가격 인상통보(9/1):280→300원/KG”라고 내부보고하였으며, 이와 같이 1999. 9. 1자로 인상한 옥배아 공급가격을 9월 중순경에 일제히 종전가격으로 환원하기로 하여 이에 따라 (주)삼양제넥스 및 (주)신동방은 각각 9. 30과 9. 22 문서로, 나머지 회사는 9월 일자미상일에 유선으로 동 사실을 거래처에 통보하는 등 옥배아 공급가격을 공동인상하여 국내 옥배아 공급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1호 위반</p>	<p>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5단×10cm의 크기로 연명으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2000. 2. 18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한국세무사회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제한행위에 대한 건 (9911단체1601)</p>	<p>한국세무사회는 내부규정인 「윤리규정」 제3조제4호에 구성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타 회원의 업무를 침해하거나 타 회원과 보수에 대한 경쟁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한국세무사회 회칙」 제46조제1항에서 징계하는 규정을 두어 구성사업자 간에 저가보수에 의한 수입경쟁을 제한하였다가 본 건 조사과정 중인 1999. 12. 20 이를 삭제하였으며, 또한 세무사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의하여 세무사들이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명칭 사용이 제한되고 개인사무소의 경우에는 명칭 사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부규정인 「세무사사무소설치운영규정」 제3조 및 제4조에서 개인사무소의 명칭과 간판 크기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칙」 제11조제1호 및</p>	<p>◎ 사업활동제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총회에서 회칙 제11조제1호 및 세무사사무소설치운영규정 제3조 및 제4조를 수정 또는 삭제토록 함</p>

사 건 명	위 반 내 용	시 정 조 치
	제46조에 의해 회원권리 정지, 경고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3호 위반	
스테인리스 스틸(STS) 재수출용 냉연강판 제조 3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9910단체1468)	인천제철(주), 대한전선(주) 및 삼미특수강(주)는 양식제조업체 등에게 수출용 원자재로 공급하는 냉연강판의 기준단가를 1999. 8. 1[단, 인천제철(주)는 1999. 8. 2]부터 종전의 달러표시에서 원화표시로 변경하면서, 달러표시 기준단가에서 원화표시 기준단가로 전환할 때의 적용환율을 동일하게 달러당 1,220원으로 하였고, 내국신용장에 표시하는 달러기준 실거래가격을 산출할 때에 매달 5일, 15일, 25일을 기준일자로 정하고, 5일~14일 사이의 거래발생 물량에 대하여는 5일자, 15일~24일 사이에 대해서는 15일자, 그리고 25일~4일 사이에 대해서는 25일자의 전신환 매매기준율을 각각 적용하기로 하고 이와 같은 가격체계의 변경내용을 1999. 7월말 전화 또는 문서에 의하여 각 사의 주요업체에 통지하고 시행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각 사의 담당부서 직원들이 재수출용 냉연강판의 가격체계 변경에 관하여 서로 의사를 교환하고 동일하게 조정하기로 서로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자신들이 구입하는 원재료인 열연강판의 가격, 경영전략 등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재수출용 냉연강판의 기준단가를 동일하게 하여 국내 재수출용 냉연강판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1호 위반	<p>◎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5단×10cm의 크기로 연명으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 과징금 납부(단위 : 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제철(주) : 366,900 · 대한전선(주) : 151,900 · 삼미특수강(주) : 113,200

2000. 2. 22 심결

사 건 명	위 반 내 용	시 정 조 치
(주)훼미리엘앤씨의 석유 판매업에 있어서의 공급자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 (9911부사1660)	주식회사 훼미리엘앤씨는 자신이 경영하는 사업장에 SK(주)의 상표를 폴사인 등에 표시·광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9. 7월부터 10월까지 실제로는 SK(주)의 석유제품 외에 다른 석유정제업자인 쌍용정유(주)의 석유판매대리점인 (주)삼광에너지로부터 휘발유 16,000l, 등유 12,000l 및 경유 23,000l 를, 쌍용정유(주)의 석유판매대리점인 (주)선진에너지로부터 휘발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자신의 사업장 출입구 등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전지크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유 129,000l 및 경유 187,000l 를, 현대정유(주)의 석유판매대리점인 (주)부광석유로부터 휘발유 20,000l 를 각각 구입·판매하여 석유제품의 공급자에 관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 위반	로 공표문을 작성하여 휴업일을 제외한 7일간 부착하여 공표토록 함

2000. 2. 25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벡튼디킨슨코리아홀딩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건 (9912기결1745)	벡튼디킨슨코리아홀딩은 기업결합외의 방법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피해보다 큰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동방의료(주)의 기존 주주들과 1999. 10. 27 신동방의료(주)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1. 1 신동방의료(주)의 주식 100%를 162억원에 인수한 후, 11. 8.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동 기업결합으로 정맥내유지침 시장에 있어서 시장집중도를 심화시켜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경우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고, 높은 관세의 영향으로 수입비중과 해외 경쟁의 도입 가능성도 미미하며, 가격인상이 우려되는 등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기업결합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7조제1항 위반	◎ 신동방의료(주)의 정맥내유지침 영업과 관련된 기계설비를 시정명령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국내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폐기 처분토록 하며, 동 설비를 매각 또는 폐기처분한 날로부터 3년간은 수출을 제외한 내수시장의 판매를 위한 기계설비를 신·증설 하지 말고, 국외에서 생산된 제품을 자신의 국내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국내에 수입하거나 판매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동 기계설비의 매각 또는 폐기가 이행된 날로부터 3년간 매 1년마다 자신의 국내특수관계인의 동 기계설비의 변동현황을 공정위에 보고토록 하고, 수출용 기계설비를 신·증설하는 경우에는 신·증설일로부터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매 1년마다 수출용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기계설비의 사용현황 및 수출실적을 보고토록 함

2000. 2. 26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주)건강박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9911광고1553)	주식회사 건강박사는 1999. 8. 18부터 10. 29까지 조선일보 등 일간지에 자기가 판매하는 금연보조제인 심심초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니코틴 없는 금연담배 심심초”라는 표제하에 제품의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나 입증이 없는 상태에서 “3일에서 3주 내에 자연스럽게 담배가 싫어지므로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라며 단기간 내에 금연에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였으며, 동 제품의 판매가격이 원래부터 99,000원임에도 불구하고 권장소비자가가 190,000원인 것을 99,000원으로 특별할인한다며 마치 저렴하게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함으로써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 위반	◎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2000. 2. 29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주)나라이동통신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9905독점0783)	주식회사 나라이동통신은 무선호출기에 대한 외상매출금은 자신의 특판대리점인 (주)우정이 매월 지불받아야 하는 관리 수수료에서 계속 상계 처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외상매출금 상환 독촉과 9개월간의 영업활동 부진에 대한 시정촉구 차원에서, (주)우정의 고객관리용 전산망을 1998년 2월부터 1998년 12월 대리점 계약 해지시까지 임의로 단절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 위반	◎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